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 (완전가맹형)

이 표준계약서의 목적은 편의점업을 운영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가맹계약(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도록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편의점업 가맹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하위가맹본부(지사 등)가 가맹본부로부터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아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경우에도 그 하위가맹계약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제1장총칙

제1조 [목 적]

이 표준계약서는 편의점업을 영업으로 하는 가맹사업 중 "완전가맹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다.
- ①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편의점업을 영위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말한다.
- ②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④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대가를 말한다. 단,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구매수 단으로 인하여 신용카드사,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직불전자지급수

단·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등에 대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나 할인금은 제외한다.

- 1.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 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 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
- 5.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 ⑤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⑥ "점포환경개선"이란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 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점포의 확장을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⑦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가맹사업의 합의]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 시스템 및 () 영업표지를 사용할 것을 약정한다.
- ②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관계법 령을 준수하고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 계약은 20 년 월 일부터 발효되며 그 기간은 계약 발효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한다.

제4조 [당사자의 지위]

-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호간에 독립한 사업자로서 대등한 관계에서 이 건가맹계약을 체결한다.
- ②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는 상호간에 대리관계나 위임관계,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 동업자 관계 등 여하한 특별한 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5조 [기맹점사업자의 권리와 권리행사의 한계]

-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부여한다.
 - 1.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경영노하우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는 권리

- 2.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가맹본부의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및 영업표지를 사용할 권리
- 3. 가맹본부가 제공 또는 대여하는 각종 서식·장비 및 내·외장 시설을 사용할 권리
- 4. 기타 가맹본부가 이 계약상의 영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사용허가의 대상으로 삼은 권리
- ②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1. () 시스템에 유해한 행위 및 제3장에서 규정하는 영업활동의 내용에 위배되는 매입·판매·기타 영업을 하는 행위
 - 2. 가맹본부의 특허, 디자인·상표권, 실용신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 거나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3.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로고, 기타 이미지 도안 등을 가맹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에 해를 끼치는 행위
 - 4.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 5.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 6.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 운영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양도, 증여 등 기타 당사자간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행위

제6조 [기맹점사업자의 투자비용]

① 가맹점의 경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의 다음 각 호의 초기 투자비용은 다음과 같다.

		급액	지급기한
1	가맹점가입비		
2	상품준비금		
3	소모품준비금		
4	시설·인테리어		
5	집기		
6	기타		
	합계		

② 가맹본부는 투자비용중 시설·인테리어[내장공사,전기공사, 정수설비, 냉장부대시설 (한전부담금, 설계비 포함), 냉난방기 등]공사 비용에 대한 내역을 가맹점 개점 후 1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제7조 [가맹금의 반환]

-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 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은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1.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고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제46조에따라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전 또는 가맹계약체결후 4개월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2.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3. 제2호의 행위를 통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로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사업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② 가맹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성명
 - 2.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
 - 3.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 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 5.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 6.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제4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 ③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내에 자기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등

가맹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영업표지 사용료,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최초교육비 등과 같이 계약기간에 따른 선급금의 성질을 갖지 않는 가맹금 중 이행이 완료된 급부의 대가에 해당하는 가맹금에 관하여는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사항]

- ① () 시스템은 가맹본부의 투자와 노력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가맹본부의 고 유한 경영노하우이자 기업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한다.
- ②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서비스마크, 배포하는 자료, 상품진열 등에 대한 지적재 산권은 가맹본부가 갖는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취급하는 상품의 품질 및 사업장의 위생을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사업장에 제공한 설비·집기 일체를 자기 책임 하에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⑥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 2 장 개점의 준비

제9조 [입지선정]

- ①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한다.
- ② 가맹본부는 제1항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점포의 실사 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 ③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조언이 있는 경우라도 최종 결정은 가맹점사업자 스스로의 책임하에 결정하며, 점포의 매출액 및 수익액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고 확인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책임으로 점포 개점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상가규약 등을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교육 및 훈련의 전 과정을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으로 수료하여야 한다.
-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때의 교육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필요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가맹본부에 특별교육 및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가맹본부는 개점시 가맹점사업자의 교육 성적이 정하는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회의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가 재교 육 후에도 불합격한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점포공사비 지급

및 집기류 등의 반환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이 준용된다.

제11조 [점포 (시설 · 인테리어)]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시설·인테리어)를 가맹본부가 정한 점포공사표준 사양의 범위 내에서 가맹본부의 부담으로 실시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기 가동안 제공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문서로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않고서는 가맹본부가 실시한 시설, 인테리어 등 점포공사를 변경하거나 점포공사표준사양 외의 추가공사를할 수 없다.

제12조 [대여설비 및 상품 등의 점검]

- ① 가맹본부는 제11조에서 정하는 개점에 필요한 점포공사가 완성된 경우 대여설비 및 상품·소모품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인도한다. 이때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대여설비의 목록 등은 별첨 I로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도받은 대여설비의 상태, 상품 및 소모품 등의 수량·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문서로서 즉시 확인한다. 단, 가맹점사업자는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하자와 수량 부족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서 인도가 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인·허가]

- ① 이 계약에 따른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 등의 제반 인·허가는 영업개시일 전까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과 비용으로 취득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갱신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체의 법적책임은 가

맹점사업자에게 있다.

제14조 [개점일]

- ① 가맹점사업자의 개점일은 점포공사 등의 진척상황을 감안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협의하여 진행한다.
- ②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점일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가 부담한다.

제15조 [개점전 계약해지]

- ① 가맹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개점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일 전까지 문서로써 의사표시를 하고, 위약금 ()원을 지급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점포 건물의 점포 내·외장 공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투입된 점포공사비용 일체를 별도로 지급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의 제1항에 따른 해지의 의사표시가 가맹본부가 대여·제공하는 집 기·설비의 설치 후에 이루어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해당 집 기·설비를 철거하고 이를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③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사정으로 인하여 개점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점포 내·외장공사의 원상회복 및 집기·설비의 철거 비용 및 위약금()원을 해지사정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6조 [개점 점검]

① 가맹점사업자는 개점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대하여 점포시설 및 초도물품 등에 대하여 점검 및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개점에 앞서 직접 실시한 점포의 설비와 비품의 구입 등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과 사양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시설공사의 완전성과 가맹사업의 이미지 통일성을 준수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한다.
- ③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개점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 1.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장에 적정 직원이 채용되지 않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공급자로부터 정해진 초도물품과 상품 기타 기기의 공급 주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3.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가맹점 개점 전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
 - 4.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개점이 연기되는 경우
 - 5. 기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제3항의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 금()원 및 시설·인테리어 잔존가 및 철거·운반비용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 3 장 영업활동

제17조 [영업시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은 원칙적으로 매일 24시간으로 하기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1. 심야 영업시간대(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직전 6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 3. 기타 가맹본부에 요청하여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제18조 [영업지역의 보호]

- 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별첨Ⅱ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 되는 경우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상품매입 및 재고유지 관리]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표준 상품진열안내서를 기초로 하여 적합한 상품의 구색과 LAY OUT 및 진열 표준화를 가맹본부의 지도하에 실행하여야 하며, 결품, 상품의 부족, 상품의 선도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발주 및 상품관리를 해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의 상품관리를 위해서 가맹본부가 추천하는 상품을 가맹본 부 및 가맹본부가 지정한 거래처로부터 매입한다. 만일 그 외의 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문서로 승인 요청을 받아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상품매입에 대한 모든 거래명세 서류를 가맹본부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하고 거래명세에 대한 전산 데이터를 해당일에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통상의 판매실적에 의거한 적절한 발주를 통해 적정 상품 재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 [판매가격 결정]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권장에 따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판단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제시한 표준판매가격과 판매가 격을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문서로써 가맹본부에 통지해 야하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21조 [광고 및 마케팅]

- ① 가맹본부는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판매촉진활동을 할수 있다.
 - 1.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홍보물의 제공
 - 2. () 시스템 및 () 영업표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판매촉진 활동
- ②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가맹본부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을 위해 필요한 판매촉진활동을 할 수 있다.
- ③ 가맹본부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에 대해 마일리지 적립, 할인 등의 보상을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판단으로 이에 참여하고, 이에 따른 비용 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제30조에서 정한 비율(가맹수수료비율)로 부담하기 로 한다.

제22조 [POS 등록]

- ① 가맹점사업자는 모든 매출액 및 수입금 등을 POS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자가소비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 당시 판매가격으로 매출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이를 확인한 즉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공급·전산지원·각종 장려금(초기 안정화 지원금 포함)을 중단할 수 있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상품 운영에 있어 발주마감 시간 및 정산시간을 준수하고,

POS시스템을 이용한 정확한 스캐닝 판매, 일 단위 단품별 마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매출액 송금]

- ① 가맹점사업자는 매일의 총매출액(상품매출액 및 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수입금액) 및 판매장려금, 대행수납금(공과금 등 일체), 대행판매(로또, 스포츠 토토, 선불카 드, 상품권 등 일체), 기타 잡수입금의 합계를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별도로 사전 협의한 경우 그에 따른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공급, 전산지원, 제 장려금 지급, 초기안정화 지원금 등을 중단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1일당(공휴일 제외) 연 ()%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송금수수료를 가맹본부에게 지불한다. 동 수수료는 연 20%이내로 한다.
- 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약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24조 [점포시설 등 관리]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문서에 의한 승낙없이 가맹점의 경영·영업활동에 사용하는 대여설비, 본건점포, 부속건축물, 기계, 서비스 상품 운영용 기기, 집기, 조명기구, 비품, 간판류 등의 모든 물건(이하 "영업용물건"이라 한다)의 사양·설비를 변경(또는 처분)할 수 없다.
- ② 대여설비 및 영업용물건의 유지·관리 및 보수와 그 위탁에 대해서는 별첨III에 따른다.
-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에 출입하여 영업용물건의 사양 및 그 수리, 도 장, 청소상태 등 유지·보수 및 관리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에 대

한 대중의 이미지, 인식 등을 고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용물건의 관리 상태에 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점포의 환경개선]

- ① 가맹본부는 제11조에 따른 점포의 시설·인테리어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 실 시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점포환경개선을 요 구할 수 있다.
 - 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② 가맹본부는 제11조에 따른 점포의 시설·인테리어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 실시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점포의 확장 또는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판 교체비용과 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위의 비용의 100분의 40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하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 ③ 가맹점사업자는 제2항의 가맹본부부담액을 청구하려면 가맹본부에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가맹본부는 전항에 따른 지급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 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가맹본부부담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⑤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종료(계약의 해지 또는 영업양도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부담액 중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에 한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제26조 [손해부담 및 보험가입]

- ①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에 달리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므로 점포 운영과 관련된 모든 손해를 부담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가입한 보험의 손실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가맹점사업자의 자산 등의 손실분에 대하여는 가맹점사업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 ③ 가맹본부는 도난·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각종 보험에 가맹본부의 명의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 4 장 회계

제27조 [회계자료 작성·제공 및 세금신고의 협력]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황에 대한 회계자료를 가맹본부의 부담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일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이 회계자

료에 반영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에 관련한 세무신고를 위하여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협력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1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가맹점사업 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세 와 가맹점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무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가맹본부 가 가맹점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그 납부를 대행할 수 있으며, 납부내역은 상호계 산계정에서 정산하도록 한다.

제28조 [실재고 및 현장입점 조사]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적정한 재고품 관리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고품 의 출입 변동 시 마다 장부에 기재한다. 이때, 재고금액의 산정방식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②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재고 상품·유가증권 등에 대한 실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비용으로 연 ()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 맹점사업자의 재고 상품·유가증권 등에 대한 실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2.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가맹본부에게 실재고조사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3.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구두 또는 문서로 통지하고 실재고조사를 실시하되, 긴급한 경우는 통지없이 실시할 수 있다.
 - 4. 가맹본부는 실재고조사의 결과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자료의 확인시점에서 ()시간 이내에 문서로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실재고조사 결과가 확정된 것으로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가

맹본부는 재조사를 실시하며 이때의 비용부담은 상호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 5. 실재고조사의 결과 장부상 재고와의 불일치에 대한 처리 등은 별첨IV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고상품·판매가격·매출액·현금·영업용 물건 및 전표 등에 대하여 현장입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상호계산계정]

-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을 바탕으로 상호거래상의 대차 및 그 결제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순차 기장하는 상호계산절차와 결제방식에 따라 계속적으로 처리한다.
- ② 상호계산계정의 내용 및 상호계산계정에 계리하는 채권·채무 및 정산방법은 별첨 V로 정한다.
- ③ 상호계산개정은 개점일에 개설하고, 이 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제42조에 따라 폐쇄하여 정산한다.

제 5 장 영업이익의 배분

제30조 [기맹수수료]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경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의 대가로 월 매출이익의 ()%의 금액(이하 "가맹수수료"라 한다)을 매월 ()일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가맹수수료율은 별첨 VI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 [영업지원금 및 장려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초기안정화 단계에서 손실을 보전해 주는 등 초기안정화를 돕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초기안정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운영에 대하여 장려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시정요청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일체의 지원금 등을 중단할 수 있다.

제32조 [정산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월 ()일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실적에 따른 이익배 분금을 포함한 정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 6 장 계약의 갱신, 해지, 종료

제33조 [영업양도]

- ① 가맹점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맹본부로부터 사전에 문서에 의한 승낙을 받지 않고 이 계약에 기초한 권리·의무 기타 계약상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 또는 양도하거나 담보설정을 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문서로써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양수인이 가맹자격과 조건에 비추어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양도요청시점의 계약준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승인하는 경우 제35조의 중도해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③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양수인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④ 가맹본부는 영업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영업양수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4조 [계약의 갱신과 거절]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1. 가맹점사업자가 이 계약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실시하는 정기적인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단,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 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③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가맹본부가 제1항 단서의 어느 사유를 들어 계약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서면으로 하거나 제3항의 거절통지를 한 경우가 아니면, 가맹계약은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만료 60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
 - 2. 천재지변 등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3.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 가 개시된 경우
 - 4.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 5.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5조 [임의 중도해지 및 위약금]

-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후 계약기간 중에 이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해지일로부터 90일 전에 문서로 통보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위약금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한다(월 평균 이익배분금은 해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12개월간으로 계산한다).
 - 1. 개점일 이후 3년 미 경과 시 :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 × 6개월
 - 2. 개점일 이후 3년 경과 시 :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 × 4개월
 - 3. 개점일 이후 4년 경과 시 :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 × 2개월
- ※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이라 함은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가맹수수료율', 가맹 본부의 경우 '1-가맹수수료율'에 매출이익을 곱한 금원을 말한다

제36조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가맹점의 영업 및 주요 자산을 양도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가맹점의 경영의 전반적·실 질적인 부분에 관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 3.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의 영업을 중단한 경우
- 4.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가맹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해당하는 행정 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 과태료 등 부과처분
 -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명령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고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단,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7.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단,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9.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7조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본부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하고 그 문서가 도달된 후 7일 이상이 경과하여도 가맹본부가 개선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문서 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1. 가맹본부가 약정한 상품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2.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 하는 경우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는 사전에 통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회생 또는 파산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청 등에 의하여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채권자에 의하여 자산 · 부채의 전반적인 관리 또는 정리를 받은 경우
 - 3. 천재지변으로 가맹점운영이 곤란한 경우

제38조 [계약위반 중도해지 및 위약금]

- ①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월 평균 이익배분금은 해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12개월간으로 계산한다).
 - 1. 개점일 이후 3년 미 경과 시 :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 × ()개월
 - 2. 개점일 이후 3년 경과 시 :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 × ()개월
 - 3. 개점일 이후 4년 경과 시 :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 × ()개월
 - ※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이라 함은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가맹수수료율', 가맹 본부의 경우 '1-가맹수수료율'에 매출이익을 곱한 금원을 말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 시설·인테리어 잔존액과 철거·보수비용을 가맹본부에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 ③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본부가 시설·인테리어 잔존액과 철 거·보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약해지 이후의 조치

제39조 [권리상실]

이 계약의 종료시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에 기한 가맹점의 경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상실한 후에는 가맹본부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이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40조 [정산재고조사]

계약기간 만료나 계약해지 및 기타 사유로 이 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이 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사업장 내에 입회해서 모든 영업용물건·매상금·현금·재고상품을 점유·관리할 수 있으며, 즉시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원활하고 신속한 정산종료를 위하여 가맹본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1조 [원상회복]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의 종료에 따라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의 영업을 중지하고 폐점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시스템 및 기타 경영기밀에 속하는 모든 정보자료·서식 용구 등을 가맹본부에 반환하고, 가맹본부를 표시하는 모든 간판·공작물·점포 내·외장을 파기내지 제거하고 가맹본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가맹본부의 대여설비를 철거하고 파손부위를 수리한 후 가맹본부가 통보한 기일 내에 지정한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단, 계약종료에 대한 귀책사유가 가맹본부에 있는 때에는 가맹본 부의 부담으로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종료로 인한 폐점을 위한 재고조사, 정산수수료 등에 필요한 폐점수수료 ()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이 종료하거나 계약종료에 대한 귀책사유가 가맹본부에 있는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상호계산계정의 폐쇄]

-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상호계산계정은 계약해지일부터 ()일 이내에 폐쇄하기로 하며 영업용 물건 등의 관리·회복 과정이나 이 계약에 바탕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원상회복 등 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채무는 상호계산계정의 해당 차변 및 대변에 계리하도록 한다.
- ② 위 제1항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상호계산계정에 계리되지 않은 채권·채무에 대해 서는 가맹본부가 별도로 작성하는 가맹점사업자의 최종정산합의서에 계리한다.
-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이 계약의 종료일부터 ()일 이내에 최종정산합의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 종료일부터 ()일 이내에 정산을 위한 모든 자료를 가맹본부에 제출해야 하며, 비협력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최종정산합의서의 작성이 ()일 이내에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자료만으로 최종정산합의서를 작성한다.

- ④ 가맹본부가 교부한 최종정산합의서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는 수령 후 ()일 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 그 기간 이 경과한 날에 최종정산합의서의 정산액은 확정된다.
- ⑤ 제4항에 따라 최종정산합의서의 정산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최종정산합의서 상의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일 이내에 채무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한다. 단, 가 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채무변제일전에 지급받을 은행계좌, 지급받을 금액 등이 기재된 최종정산합의서를 확인·제공하기로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최종정산합의서는 채무자의 채무변제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채무변제일까지 채무금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제 8 장 기타

제43조 [개량기술의 사용]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은 영업노하우 등 기술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량한 경우, 개량기술에 대한 소유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는 기술개발비, 예상수익, 원천기술의 기여분, 개량기술의 가치 등이 반영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소유권의 이전이나 실시권, 사용권 등의 설정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 [손해배상]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계약상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제45조 [분쟁해결]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의 해석 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제2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 법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소 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정보공개서의 자문]

- ① 가맹본부는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충분한 숙고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비용으로 제1항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일자가 기재된 확인서를 가맹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